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10. 13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0월 1일
- 회부일자: 2021년 10월 5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과 이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(안 제5조)
- 인구교육 협의회 (안 제6조)
- 인구교육주간 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8조)

## 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21.9.24.(금) ~ 2021.9.29.(수) 특기할 사항 없음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·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처 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,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교원 대상 인구교육 연수 실시 등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면서, 학교장은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인구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주간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인구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,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